

장성군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 등 공개에 관한 조례안 예고

「장성군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 등 공개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66조의2 및 「장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5에 따라 다음과 같이 조례안을 예고합니다.

2021년 5월 3일

장 성 군 의 회 의 장



1. 조례명 : 장성군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 등 공개에 관한 조례

2. 제안이유

-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를 공개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예산 집행의 효율성과 행정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함

3.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과 군수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1조 ~ 제2조)
- 예산낭비 공개 대상 및 방법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4조)
- 예산낭비신고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 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예산성과금 등 지급에 관한 사항(안 제7조)

4. 예고기간

- 예고기간 : 2021. 5. 3. ~ 10.(7일간)
- 예고장소 : 장성군의회 홈페이지 게시판(공지사항)

5. 조례안 : 붙임

6. 의견 제출

-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5월 10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장성군의회의회장(참조 의회사무과장)에게 방문하거나 우편 및 팩스를 통하여 서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 주소, 연락처(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 기타 사항은 장성군의회 의회사무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우 57219 전남 장성군 장성읍 영천로 200 의회사무과
- 받는 사람 : 장성군의회의회장(참조 의회사무과장)

장성군 예산절감 및 낭비 사례 등 공개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성군의 예산절감 사례를 군민들에게 공개함으로써 공무원과 장성군민에게 예산절감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고 예산 낭비 재발을 방지하여 예산집행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군수의 책무) 장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를 공개하고 장성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의견을 수렴하여 군정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제3조(공개대상) ① 이 조례에 따른 공개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예산절감 사례
2. 군민의 예산낭비 신고, 시정요구 및 감사요구와 그 조치결과에 관한 사례
3. 예산절감 및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 사례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공개할 때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4조(공개방법) ① 군수는 제3조에 따른 공개대상 사례에 대해서는 해당 사례를 모아 사례집을 발간하거나 군 인터넷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신고정보를 공개할 경우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는 삭제해야 한다.

제5조(신고센터 설치 등) ① 군수는 「지방재정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54조의2제1항에 따라 예산절감 제안 및 예산낭비 신고 등(이하 “예산낭비 신고 등”이라 한다)을 접수·처리하기 위하여 장성군 예산낭비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 신고센터에 관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지방예산낭비신고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제6조(위원회 운영) ① 군수가 영 제54조에 따라 설치하는 장성군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 제4조에 관한 사항

2. 예산의 집행 방법이나 제도개선 등에 관한 제안
3. 예산절감, 예산낭비,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
4. 군수가 예산낭비신고 등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의 기능은 장성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대신한다.

제7조(예산성과금 지급 등) ① 군수는 예산낭비신고 등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성과금 및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① 제1항에 따른 성과금 및 포상금의 지급은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 및 「장성군 포상 조례」에 따른다.